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415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미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재훈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남해군 C 대 185㎡에 관하여 2020. 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경남 남해군 C 대 18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0. 1. 7. 접수 제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D은행으로부터 2015. 7. 23. 3,000,000원, 2018. 1. 11. 8,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B의 D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19. 8. 23. B의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채권기관명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원금	대위변제이자	대위변제금 합계
1	D은행 삼천포지점	E	2019-12-03	744,000	9,013	753,013
2	D은행 남해군지부	F	2020-07-17	5,280,000	42,655	5,322,655

다. 원고의 B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및 그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금	회수 및 상환	확정지연손해금	잔 액
1	E	753,013	30,230	8	722,791
2	F	5,322,655	40,936	11	5,281,730

라.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6.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0. 1. 7.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보증번호 E에 관한 구상금 채권(대위변제금 잔액 722,791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일인 2019. 12. 3.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된다.

2) 또한 보증번호 F에 관한 구상금 채권(대위변제금 잔액 5,281,730원과 법적절차비용 31,885원의 합계 5,313,61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5,281,7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일인 2020. 7. 17.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후에 채권이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신용보증계약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 G 주식회사에 대한 6,349,929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H은행에 대한 6,13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이 법원의 G 주식회사 및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B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